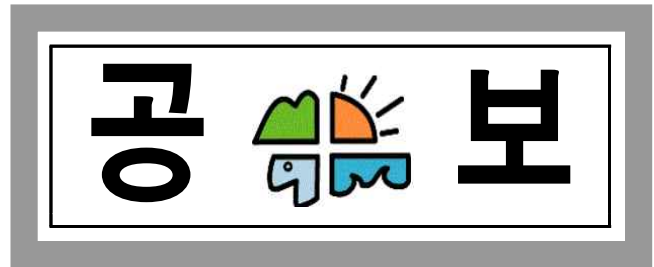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10호 2024년 1월 5일(금)

훈 령

-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

공 고

-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3
- 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4

기 타

-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 9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4년 1월 5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훈령 제784호

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1세대 1회원을 원칙”을 “영유아 1인 1회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9조(변상)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속초시 공고 제 2024-2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5일

속 초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		
	대표자 (성명)	이미0	주소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떡발재로 **
소하천명		배랑골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속초시 도문동 821-50		
	면적	14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24. 1. 1.~2028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진출입로 및 우수관로 매설		

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

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 및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5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「주택법」 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
- 사업내용 :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·보수 비용 일부 지원
- 사 업 비 : 353,500천원(시설보수비 283,500천원, 보안등 전기요금 70,000천원)

2. 지원대상

- 대상단지 : 총 156개 단지 / 31,557세대
 -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단지 : 시설보수비, 보안등 전기요금 모두 지원
 - 준공된 지 10년 미만인 단지 :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한함

구 분	합 계		10년 미만		10년 이상	
	단지수	세대수	단지수	세대수	단지수	세대수
합 계	156	31,557	33	9,602	123	21,955
아파트	96	29,464	25	9,043	71	20,421
연립·다세대	60	2,093	8	559	52	1,534

*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

* 전년도 사업(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) 포기 단지 후순위 배정/

3. 지원기준

규 모(세대수)	지원비율(%)	지원상한액
50세대 미만	사업비의 90%이하	1천5백만원
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	사업비의 70%이하	2천만원
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사업비의 60%이하	2천5백만원
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사업비의 50%이하	3천만원
500세대 이상	사업비의 50%이하	4천만원

* 「숙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제2항 및 동 조례 별표 1에 따라 보안 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%까지 우선 지원

* 사업비 : 지원금액 + 자부담금액

4. 지원항목

-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
-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
- 경로당 유지보수
- 단지 내 보·차도(주차장 포함) 등의 유지보수
-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·하수도(저수조 포함) 유지보수 및 준설
-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
-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
-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·관리 점검비용
- 주민운동시설 유지·보수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
-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

○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

-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비용의 보조 여부 결정
-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

○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

- 단지 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 보수비용의 보조를 원칙으로 함
-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설치비의 일부 지원 가능
- 보안등 전기요금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금액 지급
 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
: 전년도 전기요금 월별금액의 합계 × 90%
 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
: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서 정한 가로등(갑)의 금액을
참조한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(월/W당 47.2원) × 12월 × 보안
등 등수 × 90%

○ 경로당 유지보수

- 경로당 내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, 물품 구입은 제외함

○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·하수도(저수조 포함) 유지보수 및 준설

- 부분보수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함

6. 지원 제외대상

-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의 유사사업
-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
-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의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

7. 세부 추진일정

-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: '24. 1. 5.
-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: '24. 1. 15. ~ 2. 16.
- 현지조사 : '24. 2. 19. ~ 2. 28.
-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: '24. 3월 중
-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: '24. 3월 중
- 단지별 사업 추진 및 정산 : '24. 3월 ~ 12월

8. 신청방법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: 2024. 1. 15. ~ 2. 16.
- 신청인
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 :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
 -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 :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
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: 입주자가 연명·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명의로 신청
- 제출처 :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(종합민원실 2층)
- 신청시 제출서류
 - 1) 시설보수비
 -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 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
(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)
 - 사업계획서(아래의 사항을 포함)
 -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
 - 사업개요(사업명, 사업기간 등)
 - 사업의 목적과 내용
 -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 부담액
 -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
 -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, 사진 등 관련 서류
 - 보조금 청립사용 서약서
 - 2) 보안등 전기요금
 -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
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단지 :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
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 : 단지 내 보안등 배치도
-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

9. 관련 서식 및 안내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(www.sokcho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(☎033-639-28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

속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(확대)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지정(확대)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1월 5일

속 초 시 장

1. 목 적: 속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(확대)
2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okcho.go.kr>)게시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4. 1. 5. ~ 2024. 1. 31.
4. 지정(확대)위치 : 붙임 위치도 참조

시 설 명	소 재 지	지정 구간	지정(확대) 사유
대포초등학교	속초시 대포동 350	(당초)L=100m (변경)L=460m	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따른 추가 지정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별첨)를 속초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,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3-639-2485)

라. 보내실 곳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019)

바.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【붙임】

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치

■ 시 설 명: 대포초등학교 / 속초시 대포동 350

당초(현재)



변경(예정) / 설악산로4번길(360m)



〈별첨〉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